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물품 손망실 보고 철저 알림

1. 물품관리규정 제6조(물품관리자 등의 의무) 및 동 규정 제7장(손망실 처리) 제61조 ~ 제63조와 관련입니다.

2. 위와 관련하여 소관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, 해당 소속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지체없이 총무지원처로 손망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손망실 발견시 보고체계

- (1) 손망실 발견자 : 소관 부서장 및 총무지원처 유선보고
- (2) 소관 부서장 : 물품관리책임자(총무지원처장)에게 손망실 보고
- (3) 총무지원처장 : 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(물품관리규정 제6조 위반시)

※ 상황보고시 수신처에 총무지원처 반드시 포함 .

나. 손망실 보고서 기재내용

- (1) 발생일시 및 장소
- (2) 품명, 규격, 단위, 수량, 취득가액
- (3) 발생원인
- (4) 발생후 조치사항
- (5)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
- (6) 기타 참고사항

다. 손망실 처리계획

- (1) 물품관리규정 제6조(물품관리자 등의 의무)를 위반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것이 명백한 경우 : 총무지원처 → 사장 또는 감사 보고
- (2)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물품관리규정 제6조 위반시 : 손망실 당시의 시가기준 현금변상 원칙

붙임 관련규정 발체 1부. 끝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

수신자 나1~나43, 다1~다43, 라1~라3

부장 이가영

파트장 김완수

처장 04/18

안영권

협조자

시행 총무지원처-2438 (2016.04.18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6311-2666 전송 2004,2080(웹) / kylee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